

##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
[식품위생법 제72조]

#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/유형 : 특젤리 청포도맛/ 캔디류

나. 유통기한 : 2022.11.28.

다. 회수사유 : 이물(파리)검출
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

마. 회수영업자 : 주식회사 스위트드림

바. 주소 :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, 519호

사. 연락처 : 051-741-3033
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
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관할기관 :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(☎ 051-602-6162)